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혜택 범위 확대 >

■ 임의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58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혜택 범위 확대(안 제62조)	2

I. 제안경위

2024년 8월 8일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내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수급업체 직원까지 확대한 것으로, 그 대상을 직접 도급받은 1차 협력업체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3차 협력업체 직원까지 복지 혜택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직접 도급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재하도급’ 받는 업체의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기업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

Ⅲ. 검토의견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혜택 범위 확대(안 제62조)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업 중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 사업의 대상 범위를 현행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에서 ‘직접 도급 또는 재하도급 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해당 사업으로부터 <u>직접 도급받는</u>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6. ----- <u>직접 도급 또는 재하도급 받는</u> ----- -----
6의2. ~ 7. (생략)	6의2. ~ 7. (현행과 같음)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	② ----- ----- ----- ----- ----- -----

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1. (생략)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u>직접</u> <u>도급</u>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3. (생략) ③ (생략)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u>직접</u> <u>도급</u> <u>또는 재하도급 받는</u>----- -----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¹⁾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1) 「근로복지기금법」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조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제도임.²⁾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은 기금법인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근로자의 생활원조,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비용 지원, 근로복지시설의 구입·설치·운영,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6조의2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함.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 >

- ▲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 ▲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 ▲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 ▲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 ▲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호

2)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한편, 현행법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사업주의 출연금을 통해 조성하도록 규정하면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업 중 복리후생 증진 사업의 수혜 대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금의 복지사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금에 출연한 사업주가 직접 고용 또는 파견받아 근로하는 근로자이거나 해당 사업체의 1차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함.

따라서 기금 조성에 참여한 사업체의 협력사라고 하더라도 간접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2·3차 협력사)의 소속 근로자의 경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원청과 간접 거래관계를 맺는 사업체의 경우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장으로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비용 지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임.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2023년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체가 지출한 법정외 복지비용³⁾은 300인 미만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34.8% 수준만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3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11.2%만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기업체 규모별 기업복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3) 주거, 건강·보건, 식사, 교통·통신, 보육 지원, 보험료 지원, 자녀 학비보조, 휴양·문화·체육·오락비용 등

< 사업체 규모별 법정외 복지비용 >

(단위 : 천원, %)

구 분	계	식사 비용	교통 통신비	건강 보건비용	자녀 학비 보조	사내 근로 복지	주거 비용	보험료 지원금	휴양 문화 체육	기타
전 규모	272.2 (100.0)	86.7 (31.9)	29.1 (10.7)	20.0 (7.3)	18.1 (6.6)	13.1 (4.8)	14.4 (5.3)	13.0 (4.8)	12.6 (4.6)	65.1 (23.9)
300인 미만 (A)	151.3 (100.0)	81.2 (53.7)	15.8 (10.4)	5.5 (3.6)	5.1 (3.4)	3.0 (2.0)	10.2 (6.7)	7.7 (5.1)	5.4 (3.6)	17.4 (11.5)
300인 이상 (B)	434.2 (100.0)	94.1 (21.7)	46.9 (10.8)	39.5 (9.1)	35.6 (8.2)	26.7 (6.1)	19.9 (4.6)	20.2 (4.7)	22.2 (5.1)	129.2 (29.8)
A/B*100	34.8	86.3	33.7	13.9	14.3	11.2	51.3	38.1	24.3	13.5

주 : 1. ()안은 구성비임.

2. '기타'에는 보육지원금, 우리사주제도 지원금, 복지포인트, 경조비, 피복비, 전근 이
사지원비 등 포함

자료 : 고용노동부, '2023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2024.9.30.

따라서 원청의 출연을 통한 근로복지기금 재원을 2·3차 협력사에 근
무하는 근로자에게까지 사용하여 기업체 규모별 기업복지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는 2024년부터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통해 간접 거래관계를 맺
고 있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원청 사업주의 출연금에 대한 매칭 지
원을 통해 협력사 근로자의 복지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개요 >

구 분		내 용
사업 목적		협력사 근로자 복지개선을 위한 노·사의 자율적인 재원 형성 촉진
사업 대상		간접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 * 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 직접 거래관계 협력사 포함 가능
지원 내용	매칭 비율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근로자 출연분의 최대 200% 매칭 지원
	지원 한도	1개 업종당 최대 40억원, 1개 기업당 최대 15억원 * 특정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넘을 경우, 업종당 최대 한도 적용
복지사업 가능 범위		▲복지시설(구내식당, 공동화장실 등) 구입·설치·리모델링·운영 지원 ▲근로자 및 그 자녀의 장학금·입학금·학원수강료(학비 일부) 등 지원 ▲체육·문화 활동(동아리 활동비, 문화생활 지출비 등) 지원 ▲근로자의 의료비, 건강진단비, 보육료 등 지원 ▲특정 날짜·사건에 대한 기념품·선물·위로금 등 지급

자료 : 2024년 상생연대 형성지원 시행지침 재구성

그러나 동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재원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국고지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대한 관리·운영 규정이 없어 지속적인 복지사업 수행이 담보되지 않으며,⁴⁾ 원청이 2·3차 협력사 근로자를 위해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여 출연해야 하는바 2·3차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폭넓은 복지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개정안은 사내·공동복지기금 사업에 ‘재하도급 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사업주가 이미 조성한 사내·공동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하청 간 및 기업간 복지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동 사업은 일반회계를 통해 ‘민간경상보조(320-01목)’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동 비목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국고보조금은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하여야 함.

문 의 처
02)6788-5535